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075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2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2

Ⅰ. 개요

1. 이종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0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종욱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30.

(3) 회 부 일 : 2024. 12. 3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취약계층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제1항).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 - 65세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대상자: - (현행과 같음)
○ 비과세한도: 5천만원	○ 비과세한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송석준의원안) - 2027년 12월 31일까지(이종욱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만희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12.4. 발의(의안번호 6200), 이종욱의원안 2024.12.30. 발의(의안번호 7075), 송석준의원안 2025.1.2. 발의(의안번호 7210)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송석준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1년간)까지, 이종욱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2년간)까지, 이만희의원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연장하려는 것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1]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

---

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과세특례는 저축상품 간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저율(9%) 분리과세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2]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던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22년 9월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791만개, 가입자 수는 약 435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3]

조세지출 또한 2021년 2,575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 5,46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정부는 2024년 이후 1조원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하여도 저축원금 1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폐지되었음.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2. 9.

로 전망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와 같이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리 상승[4]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수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조세지출 규모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임.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전망)	2025(전망)
감면액	2,575	2,554	5,461	10,914	11,929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자산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2년 실시된 조세특례 심층평가[5]에 따르면, 동 제도의 혜택이 저소득층에 귀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순자산 지니계수[6]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자료: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4)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2022년1월)→ 연3.25%(2023년 1월)
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2022. 9.
6)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둘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고엽제휴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헌신을 고려한 것으로 두터운 지원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 과세특례는 65세 이상 거주자도 일률적으로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 전술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과 같은 수준의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향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조세지출 증대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서도 향후 만 65세의 노인계층이 총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을 감안할 때,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61